



# 김해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 414 호 2018. 7. 27.(금)

선	기 관 의 장
람	

### 규 칙

- 제 626호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 21824
- 제 627호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1861

### 고 시

- 제2018-180호 김해도시계획시설(연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862
- 제2018-18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869
- 제2018-183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 21870
- 제2018-184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 중로3-9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21871
- 제2018-185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21874
- 제2018-186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28호선,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21876
- 제2018-187호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 21879
- 제2018-188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관동2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 21880
- 제2018-189호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21881
- 제2018-190호 김해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21883
- 제2018-1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21885

### 공 고

- 제2018-2730호 경남 김해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21895

회										
람										

발행 : 김해시 편집 : 공보관 (330-3011, 행정 3011)

제50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18년 7월 27일

김해시 규칙 제626호

###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

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시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및 그 소속원

자.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해 시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카. 「의료법」 제23조의2,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타. 그 밖에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김해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6.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7.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 능률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

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명을 하거나 상담을 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7. 자신과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시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에 따라 시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채용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의 범위

가.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야

나. 도시(재)개발·택지개발 관련 분야

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관련 분야

라.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분야

마. 도로·철도·공항시설 관련 분야

바. 관광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관련 분야

사. 유통산업 관련 분야

아. 투자유치 관련 분야

자. 국·공유재산 관련 분야

차. 각종 기금 운영 및 시 금고 선정·관리 관련 분야

카.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관련 분야 등

2. 대상자: 제1호 업무 관련 공무원

3. 제한기간: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20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관사, 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시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등)**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

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1조(교육등)**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 또는 컨설팅(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관한 교육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시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시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김해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목 및 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	----	--------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	----	--------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제6조제2항 관련)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b>직무 관련 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중



[별지 제6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b>직무 관련 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중

[별지 제7호서식](제6조제6항 관련)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b>직무 관련 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

관련 사항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

확인 사항	
-------	--

조치 내역	
-------	--

기타 참고사항	
------------	--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 기타


작성일자 : 20 . .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서식](제11조제2항)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	--	----	--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	--

접촉 사유	
-------	--

비용 부담자	
--------	--

참고서류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제14조제1항 관련)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정치인등 인적사항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제23조제2항 관련)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 20 .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서식](제24조제1항 관련)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	---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제25조제4항 관련)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대상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거래 금액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15호서식](제27조 관련)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그 외(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제28조제1항 관련)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소속 및 직위(직급)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제30조제1항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제30조제3항 관련)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제30조제5항제3호 관련)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제30조제6항 관련)

###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 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관리 부서 (관리 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	성명	소속	직위 (직급 )	성명						

◇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8. 1. 17. 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이 개정('18. 4. 17. 시행)되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다수의 규정이 대폭 신설·개정됨에 따라,
-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여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신설(안 제7조)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신설(안 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신설(안 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설(안 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신설(안 제11조)
- 알선·청탁 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8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안 제21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22조)
  - 수수 허용 금품등 가액 기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에 따름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23조)
  - 사례금 상한액 기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름
  - 외부강의 보완 신고기간 : 5일 이내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25조)

제50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18년 7월 27일

김해시 규칙 제627호

###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공개모집에 응시자가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강의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강의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 수입금을 집행함에 있어 행사실비보상금을 추가하여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계약기간이 종료된 강사의 3개월간 계약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모집에 응시자가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 수입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 김해도시계획시설(연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연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055-330-69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7일

김 해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7	연지 공원	근린 공원	김해시 내동 106-1번지 일원	95,415.5	-	95,415.5	1991.11.26	



##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 1) 총괄표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95,415.5	-	95,415.50		
시설면적계	29,094.15	증) 10.85	29,105.00	• 시설율 : 30.50% (법적 기준 : 40%이하)	
건면 축적	바면 단적	1,925.36	-	1,925.36	• 건폐율 기정 : 1.98% • 건폐율 변경 : 2.02% • 관리사무소 신설 (건폐율법적 기준 : 15%이하)
	연면적	2,502.50	-	2,502.50	

### 2)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95,415.50	-	95,415.50	-
도로및광장	18,131.20	-	18,131.20	-
조경시설	2,013.00	-	2,013.00	-
유희시설	1,015.00	-	1,015.00	-
운동시설	2,073.65	-	2,073.65	-
교양시설	1,403.60	증) 10.85	1,414.45	• 평화의 소녀상 건립
편익시설	4,172.55	-	4,122.95	-
공원관리시설	285.15	-	334.75	-
녹지및기타	66,321.35	감) 10.85	66,310.50	• 녹지면적 감소

## 나. 세부시설조사

### (1) 도로 및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8,131.2	-	-	-	
기정	1	도로	-	10,641.0	-	-	-	
기정	1-1	진입광장	-	1,124.0	-	-	-	
기정	1-2	광 장	-	827.4	-	-	-	
기정	1-3	광 장	-	1,605.3	-	-	-	
기정	1-4	진입광장	-	645.5	-	-	-	
기정	1-5	중심광장	-	2,421.0	-	-	-	
기정	1-6	진입광장	-	867.0	-	-	-	

### (2) 조경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2,013.0	-	-	-	
기정	2-1	수변휴게소	-	133.0	-	-	-	
기정	2-2	수변휴게소	-	264.0	-	-	-	
기정	2-3	수변휴게소	-	147.0	-	-	-	
기정	2-4	수변휴게소	-	189.0	-	-	-	
기정	2-5	친수공간	-	1,280.0	-	-	-	

**(3) 유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015.0	-	-	-	
기정	6	어린이놀이터	-	598.0	-	-	-	
기정	6-1	어린이놀이터	-	417.0	-	-	-	

**(4) 운동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2,073.65	1,619.45	2,196.59		
기정	3-2	다목적운동장	-	454.2	-	-	-	
기정	3-3	학생체육관	-	1,619.45	1,619.45	2,196.59	-	

**(5) 교양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기정 1,403.6	변경 증)10.85	변경후 1,414.45	-	-	-	
기정	5	야외무대	-	711.6	-	711.6	-	-	-	
기정	5-1	야외전시장	-	565.0	-	565.0	-	-	-	
기정	5-2	야외전시장	-	55.0	-	55.0	-	-	-	
기정	5-3	야외전시장	-	56.0	-	56.0	-	-	-	
신설	5-4	평화의 소녀상	-	-	증)10.85	10.85				
기정	9	파리장서 독립운동기념비	-	16	-	16	-	-	-	

**(6) 편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4,122.95	194.91	194.91	-	
기정	4-1	화장실	-	60.00	53.38	53.38	-	
기정	4-2	화장실	-	60.00	53.38	53.38	-	
기정	4-3	주차장	-	668.00	-	-	-	
기정	4-4	주차장	-	1,623.60	-	-	-	
기정	4-6	주차장	-	366.20	-	-	-	
기정	4-7	주차장	-	455.00	-	-	-	
기정	4-8	전망테크	-	191.00	-	-	-	
기정	4-9	전망테크	-	479.00	-	-	-	
기정	4-10	전망테크	-	132.00	-	-	-	
기정	4-11	화장실	-	88.15	88.15	88.15	-	

**(7) 공원관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334.75	111.00	111.00		
기정	7-1	음악분수 조정실	-	142.00	78.00	78.00	-	
기정	7-2	전기시설	-	55.00	-	-	-	
기정	7-3	관리사무소	-	137.75	33.00	33.00	-	

**(8) 녹 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기정	변경	변경후	-	-	-	
				66,321.35	감)10.85	66,310.5				
변경	8	녹지	전지역	66,321.35	감)10.85	66,310.5	-	-	-	

## 다. 세부도로조서(변경없음)

### (1)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중 로		소 로		세 로	
		연장(m)	면적(m <sup>2</sup> )	연장(m)	면적(m <sup>2</sup> )	연장(m)	면적(m <sup>2</sup> )	연장(m)	면적(m <sup>2</sup> )
합 계	기정	3,005.0	10,641.0			3,005.0	10,641.0		
소로	1류 기정	-	-	-	-	-	-	-	-
	2류 기정	5.0	45.0	-	-	5.0	45.0	-	-
	3류 기정	3,000.0	10,596.0			3,000.0	10,596.0		

### (2) 세부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형태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3,005.0	10,641.0			
기정	소로	2	진 2	9.0	진입로	5.0	45.0	중1-6	광장1-3	
기정	소로	3	진 3	4.0	진입로	4.0	16.0	중1-6	연 11	
기정	소로	3	진 4	6.0	진입로	5.0	30.0	중1-6	주차장	
기정	소로	3	진 5	7.0	진입로	5.0	35.0	중1-6	연 15	
기정	소로	3	진 6	2.0	진입로	34.0	68.0	중1-6	연 15	
기정	소로	3	진 8	5.0	진입로	5.0	25.0	지구계	연 16	
기정	소로	3	진 9	5.0	진입로	18.0	90.0	연 20	지구계	
기정	소로	3	연 1	5.0	연결로	46.0	230.0	광장1-1	연 2	
기정	소로	3	연 2	4.0	연결로	60.0	240.0	광장1-1	광장1-3	
기정	소로	3	연 3	5.0	연결로	313.0	1,565.0	광장1-1	연 16	
기정	소로	3	연 4	4.0	연결로	17.0	68.0	연 3	연 5	
기정	소로	3	연 5	3.0	연결로	346.0	1,038.0	광장1-1	연 16	
기정	소로	3	연 6	4.0	연결로	5.0	20.0	연 8	연 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형태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연 7	4.0	연결로	13.0	52.0	광장1-3	연 8	
기정	소로	3	연 8	4.0	연결로	83.0	332.0	연 11	광장1-2	
기정	소로	3	연10	2.0	연결로	28.0	56.0	연 11	연 3	
기정	소로	3	연11	3.0	연결로	86.0	258.0	연 13	연 9	
기정	소로	3	연12	2.0	연결로	28.0	56.0	연 11	주차장	
기정	소로	3	연13	2.0	연결로	64.0	128.0	다목적운동장	연 15	
기정	소로	3	연14	2.0	연결로	13.0	26.0	야외무대	연 3	
기정	소로	3	연15	4.5	연결로	58.0	261.0	중1-6	연 15	
기정	소로	3	연16	5.0	연결로	380.0	1,900.0	진입광장1-6	연 19	
기정	소로	3	연17	3.0	연결로	242.0	726.0	연 5	광장1-5	
기정	소로	3	연18	3.0	연결로	15.0	45.0	연 17	연 16	
기정	소로	3	연19	5.0	연결로	33.0	165.0	광장1-5	광장1-4	
기정	소로	3	연20	5.0	연결로	262.0	1,310.0	광장1-1	연 19	
기정	소로	3	연21	3.0	연결로	21.0	63.0	연 22	연 20	
기정	소로	3	연22	3.0	연결로	142.0	426.0	광장 1-5	연 20	
기정	소로	3	연23	3.0	연결로	12.0	36.0	연 5	연 24	
기정	소로	3	연24	2.0	연결로	189.0	378.0	연 25	전망테크	
기정	소로	3	연25	2.0	연결로	11.0	22.0	수변휴게소	연 24	
기정	소로	3	연26	2.5	연결로	13.0	33.0	수변휴게소	전망테크	
기정	소로	3	연27	2.0	연결로	210.0	420.0	광장1-5	연 26	
기정	소로	3	연28	2.0	연결로	233.0	466.0	광장1-5	수변휴게소	
기정	소로	3	연29	2.0	연결로	6.0	12.0	수변휴게소	연 28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 고시 제2018 - 182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방동 103-1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7. 27.

# 김 해 시 장

###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			용도지역·지구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부 해제	김해시 삼방동 103-1번지 일원	270,150	감)142,690	127,460	일반공업지역	

### 2. 변경사유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김해 안동1지구) 수립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3. 제한대상 행위 (변경없음)

- 김해시 고시 제2017-186호(2017.7.17.)에 의한 행위제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와 이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 허용

### 4. 제한기간 : 2016. 6. 29. ~ 2018. 10. 28. (변경없음)

###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055-330-4844)

김해시 고시 제2018-183호

##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18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김해시 구역안의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김 해 시 장

### 1.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단위 : 원/㎡)

지 목	지목별 평균치	지 목	지목별 평균치
전	97,659	제 방	37,049
답	112,214	하 천	43,802
과 수 원	45,733	구 거	55,454
목장용지	147,849	유 지	84,704
임 야	12,019	양 어 장	102,217
대	645,005	수도용지	40,361
공장용지	365,141	공 원	155,133
학교용지	582,652	체육용지	92,839
주 차 장	570,349	유 원 지	108,723
주유소용지	641,951	종교용지	344,771
창고용지	299,963	사 적 지	114,184
도 로	95,050	묘 지	46,592
철도용지	40,633	잡 종 지	152,206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 중로3-9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 중로3-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3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 중로3-9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진영 좌곤삼거리(하우스토리APT) 도시계획도로(중3-9호선) 확장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대로1-1-1	22,580	35~49	32	0~5	117	최초결정일 1991.12.31
중로3-9	320	12~13	140	12~13	1,991	최초결정일 1999.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2401 (부원동623)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7. 실시계획 인가 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4)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면적	편의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 종류 및 내용	
1	좌곤리	450-3	도	37	5	김00	마산부만정***				
2	좌곤리	450-2	도	635	26	정00	마산시 양덕동 54-3 장미아파트 *동***호	김**	창원시 외동 853-16 외동아파트 *동 ***호	근저당권	
3	좌곤리	450-9	대	34	26	이00	진영읍좌곤리***-*				
4	좌곤리	336-2	도	747	33	국토 교통부					
5	좌곤리	336-5	도	63	2	윤00	진영읍 좌곤리 ***				
6	좌곤리	337-2	도	149	24	기획 재정부					
7	좌곤리	337-4	도	13	1	양00	진영읍 좌곤리 ***				
8	좌곤리	639-1 0	도	217	212	국토 교통부					
9	좌곤리	357-3	도	3	1	강00	김해시 진영읍좌곤리 ***	김해시		가처분설정	
10	좌곤리	450-1 1	대	59	59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설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동 ***-*	가압류	
11	좌곤리	450-1 0	도	227	227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층	설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동 370-1 청구타운 ***동 ***호	가압류	
12	좌곤리	356-4	학	79	79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층				
13	좌곤리	357-2	도	53	53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설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동 370-1 청구타운 ***동 ***호	가압류	
14	좌곤리	310-9	대	21	21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설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동 370-1 청구타운 ***동 ***호	가압류	
15	좌곤리	310-1 0	대	78	78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설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동 370-1 청구타운 ***동 ***호	가압류	
16	좌곤리	356-2	도	202	202	농림축산 식품부					
17	좌곤리	310-1 1	답	168	168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설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동 370-1 청구타운 ***동 ***호	가압류	
18	좌곤리	337-1	도	53	53	기획 재정부					
19	좌곤리	639-1 2	학	1	1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상면적	편의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종류 및 내용	
20	좌곤리	351-2	도	115	115	아시아00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	설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70-1 청구타운 ***동 ***호	가압류	
21	좌곤리	351-1	도	50	50	이00	마산시 월포동1경동메르빌아파트***동***호				
22	좌곤리	355-8	구	60	1	양00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				
23	좌곤리	355-13	도	10	10	정00 정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3. ***동 1****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팔판로 93. ***동 ****호				
24	좌곤리	639-11	도	200	61	국토교통부					
25	좌곤리	310-4	답	443	39	박00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	부원새마을금고	김해시 부원동 ***-**	근저당권 지상권	
26	좌곤리	355-2	도	281	281	김00	창원군 창원면 석답리 ***	김00		가처분 설정	
27	좌곤리	355-3	전	99	70	최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				
28	좌곤리	352-2	도	377	66	안00 강00 강00 강00 강00 강00 강00	부산 동래구 부곡동*** 부산 동래구 부곡동*** 부산 동래구 부곡동*** 부산 동래구 부곡동*** 부산 동래구 부곡동*** 부산 동래구 부곡동*** 부산 동래구 부곡동***				
29	좌곤리	352-5	전	75	15	손00	진영읍 좌곤리***				
30	좌곤리	352-4	전	39	34	산청영계 000000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갈전로 ***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31	좌곤리	450-4	대	26	9	이00	경상남도 김해시 좌곤리 ***-*				
32	좌곤리	310-1	대	257	15	이00 최00	경상남도 김해시 좌곤리 ***-* 경상남도 김해시 좌곤리 ***-*				
33	좌곤리	310-2	대	679	34	이00 최00	경상남도 김해시 좌곤리 ***-* 경상남도 김해시 좌곤리 ***-*				
34	좌곤리	310-3	답	2,417	37	이00	경상남도 김해시 방동리****-*				

김해시 고시 제2018-185호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신문동 49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유무계교~부영E그린간 도시계획도로(중2-1호선)확장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중로2-1	935	15~21	600	18~20	5,128	김해시 고시 제2018-51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36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인가 사유
  - 신문동 일원으로서 기존도로 폭이 협소하고, 마을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에 확장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6필지		16,337	5,128						
1	신문동	507-14	답	75	6	박00	부산 동래구 명장동 ****-****	경남은행		근저당	
2	"	502-10	도	257	106	김해시					
3	"	502-3	답	74	74	최00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	"	502-12	도	21	21	최00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5	"	502-13	답	8	8	최00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6	"	508-3	도	3	2	국 (국토교통부)					
7	"	1375-42	구	210	100	국 (국토교통부)					
8	"	497-3	도	3,223	2,840	국 (기획재정부)					
9	"	501-15	답	45	19	이00 손0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				
10	"	501-14	답	164	105	이00 손0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				
11	"	501-12	답	159	102	장00	서울 강남구 선릉로 ***	대구은행		근저당	
12	"	501-10	도	393	27	김해시					
13	"	503-7	전	90	56	신00 진00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				
14	"	503-9	전	124	94	오00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5	"	503-10	전	70	63	오00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6	"	503-11	대	87	86	김해시					
17	"	504-5	답	454	66	김해시					
18	"	504-13	답	107	107	㈜KP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 ***				
19	"	504-12	답	99	99	오00	경남 김해시 신문동 ****-*	농협		근저당	
20	"	1394	도	1,036	31	국 (국토교통부)					
21	"	1375-1	구	775	83	국 (국토교통부)					
22	"	1219-2	도	188	11	국 (국토교통부)					
23	"	1217-1	도	79	40	국 (국토교통부)					
24	"	1263-3	도	149	4	국 (국토교통부)					
25	"	1204-2	도	2,568	100	한국도로공사					
26	"	1203-2	도	5,879	878	국 (기획재정부)					

김해시 고시 제2018 - 186호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28호선,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28호선,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8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외동 107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28호선,체육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외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진입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소로2-128	당초	279	8~12	2,768	186.7	8~12	2,080
	변경	279	8~12	2,768	191.7	8~12	2,090
체육시설	당초	44,022			2,075		
	변경	45,449			3,46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외동지역주택조합 대표 진성철
  -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29번길 28, 2층201호(어방동)
5. 사업기간 : 2017.10.16 ~ 2020.4.15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유
  - 실시계획 인가 조건사항(외동 1082-11번지 편입)반영,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체육시설확장) 및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여종류 및 내용	
1	외동	915-3	답	383 -	10 -	한덕건설 (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				
1	외동	915-8	답	- 10	- 10	한덕건설 (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				분할
2	외동	1082-7	답	360 -	212 -	흥00	김해시 장유면 율하로 ****-**	부산 은행		근저당권	
2	외동	1082-23	답	- 212	- 212	㈜더블유엔	김해시 금관대로 ****	중소기 업은행		근저당권	분할
3	외동	1074-5	임	184 -	138 -	강00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				
3	외동	1074-13	임	- 142	- 142	강00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				분할
4	외동	1171-3	도	1,074 -	93 -	국 (국토교통부)					
4	외동	1171-12	도	- 93	- 93	국 (국토교통부)					분할
5	외동	산28-3	구	462 -	24 -	국 (국토교통부)					
5	외동	1094-9	구	- 24	- 24	국 (국토교통부)					분할
6	외동	1074-11	임	468 29	29 29	김해외동지 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분할
7	외동	1074-7	임	197 -	109 -	김해시					
7	외동	1074-14	임	- 109	- 109	김해시					분할
8	외동	1173	구	111 -	71 -	국 (농림축산식 품부)					
8	외동	1173-9	구	- 71	- 71	국 (농림축산식 품부)					분할
9	외동	1074-4	임	5,239 2,285	2,061 2,285	김해외동지 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분할
10	외동	1074-12	임	- 43	- 43	김해외동지 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분할
11	외동	1074-6	임	17 17	17 17	김해외동지 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2	외동	1080-1	임	1,951 -	65 -	김해외동지 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2	외동	1080-3	임	- 64	- 64	김해외동지 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분할
13	외동	1080-2	임	15 15	15 15	김00	김해시 우암로 **				
14	외동	1083-4	전	44 44	44 44	가야아이비 에스(주)	김해시 외동 ****				
15	외동	1074-10	전	256 256	57 88	손00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농협		근저당권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종류 및 내용	
16	외동	1075	대	1,793 -	277 -	김해외동 지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6	외동	1075-5	대	- 276	- 276	김해외동 지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분할
17	외동	1075-4	도	71 -	14 -	김해외동 지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7	외동	1075-6	도	- 14	- 14	김해외동 지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분할
18	외동	1082-4	대	259 -	148 -	이00	김해시 안동 ***-*				
18	외동	1082-22	대	- 146	- 146	김해외동 지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분할
19	외동	1082-15	대	25 25	25 25	김해외동 지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20	외동	1082-16	답	105 105	105 105	이00	부산시 남구 문현동 ***-**				
21	외동	1083-2	구	357 357	357 357	임00	김해시 외동 ***				
22	외동	1087-2	구	198 198	198 198	임00	김해시 외동 ***				
23	외동	1082-8	장	903 -	86 -	조00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23	외동	1082-24	장	- 85	- 85	㈜한은에스에프	김해시 분성로 ***-**	대구은행		근저당권	분할
24	외동	1074-8	전	- 686	- 26	정00	부산시 강서구 경전철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신규
25	외동	1074-9	임	- 2,400	- 1,068	김해외동 지역주택조합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신규
26	외동	1082-11	답	- 11	- 11	서00	부산시 북구 덕포동***				신규
합계				14,472 7,717	4,155 5,557						



김해시 고시 제2018 -187호

##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 변경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134-1번지 외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사업의 명칭 : 주차장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시설결정 면적(m <sup>2</sup> )	사업시행 면적(m <sup>2</sup> )	시행규모(대)	비고
주차장	590	590	주차면수 20	시설결정 :경고 제2004-193호 (2004.07.2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당초 : 이광열,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114동 1704호
  - 변경 : 이광열,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114동 1704호  
이광민,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3, 214동 1501호
5. 사업기간
  - 당초 : 2017. 03. 24 ~ 2018. 03. 24
  - 변경 : 2017. 03. 24 ~ 2019. 03. 24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잔여 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134-1	답	2,185	546	1,639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동 ***호	
		134-2	도	89	1	88	이**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 ***동 **호	
3		13-16	제	4,192	43	4,149	한국농어촌 공사	김해시 서상동 258	

7.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유
  - 편입토지 보상(미등기)지연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4)비치】

김해시 고시 제2018-188호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관동2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관동2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관동동 46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관동2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관동2근린공원(관동고분공원) 수경시설 설치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	시행면적 (㎡)	비 고
관동 근린공원	21,753.1	252 (생태원:252)	최초결정일 1998.12.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공원관리과장)
  -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8.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내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김해시 관동동	460-1	공원	21,753.1	252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			

7. 실시계획 인가 사유
  - 지역주민의 이용성향을 고려하여 공원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심 랜드마크로 조성을 위해 지하수를 활용한 생태원 조성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김해시 고시 제2018 - 189호

##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96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김 해 시 장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산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M2)	금회시행(M2)	비고
수도공급설비	27,171⇒ 27,138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조정	27,138	김해시 고시 제2018-75호 (2018.03.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수도과장)
  -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12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인가 사유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설치사업으로 배수지와 송수관로 증설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을 위한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4)비치

### ②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3	수도공급 설비	진례면 담안리 산9 일원	27,171	감)33	27,138	김해시고시 제2018-75호 (2018.03.23)	

- 수도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3	수도공급 설비	·면적변경 A=27,171m <sup>2</sup> ⇒ 27,138m <sup>2</sup> (감33m <sup>2</sup> )	·실시계획 수립위해 실시한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조정을 위함

- 지형도면 : 시공보 게재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모리	38-3	도	198	17	김해시	-				
2	고모리	1454	도	2,978	56	국 국토교통부	-				
3	고모리	39-5	전	43	43	김해시	-				
4	고모리	산14-11	임	174	174	진000000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				
						이00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번길 * 온천화신아파트 *동 ***호				
						김00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번길 * 온천화신아파트 *동 ***호				
5	고모리	42	전	369	235	김00	김해시진례면고모리42	진*** ****		근저당, 지상권	
6	고모리	산14-12	임	166	166	진000000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번길 **				
						이00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번길 * 온천화신아파트 *동 ***호				
						김00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번길 * 온천화신아파트 *동 ***호				
7	고모리	43	전	169	111	김00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	진*** ****		근저당, 지상권	
8	고모리	41-5	임	53	48	(주)00000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산**				
9	고모리	41-4	임	156	72	(주)00000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산**				
10	고모리	산14-13	임	1,713	1,431	김해시	-				
11	고모리	산20-2	임	415	411	최00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번길 ***-**, 대방아파트 ***호				
						김해시	-				
12	고모리	44	답	912	641	김00	김해시 삼계로 ***, 화정마을부영아파트 ***동 ***호				
						박00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				
13	고모리	산20-3	임	13	13	최00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번길 ***-**, 대방아파트 ***호				
						김해시	-				
14	고모리	산19	임	8,331	8,331	김해시	-				
15	고모리	산20-4	임	328	328	최00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번길 ***-**, 대방아파트 ***호				
						김해시	-				
16	고모리	산29-4	임	4,020	3,682	김해시	-				
17	고모리	86-2	과	659	341	김해시	-				
18	고모리	산21-2	임	4,759	3,638	김해시	-				
19	고모리	산24-1	임	4,142	3,996	김해시	-				
20	고모리	산26	임	9,091	3,388	박00	부산시 남구고 동골로 **번길 **(문현동)				
						조00	김해시 활천로 ***번길*, 대동아파트 나-****				
21	고모리	산26-1	임	132	16	김00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동원아파트 ***동 ***호				

김해시 고시 제2018 - 190호

## 김해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96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김 해 시 장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산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 도시계획(교통광장)사업
  - 사업의 명칭 : 진영역 광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물		도시계획시설 결정	금회 사업규모	비 고 (시설결정)
광 장(교통광장)	당초	4,591 m <sup>2</sup>	4,575 m <sup>2</sup>	김해시 고시 제 2017-280호
	변경		4,591 m <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 주 소 : 김해시장(대중교통과장)
5. 사업기간
  - 당 초 : 2018. 2. 23 ~ 2018. 8. 22
  - 변 경 : 2018. 2. 23 ~ 2018. 12. 2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변경 사유
  - 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한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조정 및 광장조성사업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4)비치】

##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	광장	교통(역전)광장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산18번지 일원	4,520	증)71	4,591	'17.11.10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li> <li>- 면적 : 4,520㎡ ⇒ 4,591㎡ 증)7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계획 수립위해 실시한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조정을 위함</li> </ul>

○ 지형도면 : 시공보 게재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소유자	비고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면적(㎡)			
1	설창리	산17-1	919	868	산17-1	868	임	김해시	
2	"	산18	1,082	1,082	산18	1,082	임	"	
3	"	산18-2	593	593	산18-2	593	임	"	
4	"	산21-9	84	84	산21-9	84	임	"	
5	"	산21-12	363	275	산21-12	275	임	"	
6	"	산17-3	441	20	산17-5	24	임	국토부	
7	"	산17-4	128	61	산17-6	64	임	"	
8	"	산18-1	1,003	757	산18-3	760	철	"	
9	"	산21-8	12,655	812	산21-19	546	철	"	
					산21-20	272	철		
10	"	산21-18	32	17	산21-21	17	임	"	
11	"	141-13	445	6	141-15	6	임	"	
합계	11필지		17,745	4,575	12필지	4,591			

김해시고시 제2018- 19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10.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외 1인

2) 대표자성명 : 이한우 외 1인

3)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57, 501호(삼계동, 우리빌딩)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

2) 면 적 : 121,924.50㎡

3)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연면적 : 294,246.0137㎡

○ 주택평형별 및 규모

사업종류	건물규모	평형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	주거공용
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지상29층 21개동	64	236	83.7212	64.3057	19.4155
		75	334	97.5124	75.2363	22.2761
		84	1,366	109.8377	84.9855	24.8522
		소계	1,936	202,365.6080	156,395.2624	45,970.3456

○ 부대건물현황

구분	규 모		비고
	층수	연면적(m <sup>2</sup>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지하 1층	247.379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지상 1층	400.1000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지하 1층	152.7335	
주민공동시설(입주자집회소)	지하 2층	133.2533	
주민공동시설(실내 운동시설)	지하 3층~지하 1층	4,962.9453	
주민공동시설(실외 운동시설)	지상 1층	1,164.2600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지상 1층	1,989.6400	
관리사무소	지하 2층	210.9107	
방재실	지하 2층	56.3066	
MDF	지하 1층	42.8914	
경비실	지상 1층	56.8800	
펌프실/전기실	지하 4층	1,128.9559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지하1층	4,706.7353	

라. 사업시행기간 : 2018. 05. 01. ~ 2020. 10. 31.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 붙임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3. 승인관련서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36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1>

## 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5	두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	122,039.0	감) 114.5	121,924.5	김해시고시 제2018-81호 (2018.03.26)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85	두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증가 : 122,039㎡ → 121,924.5㎡ 감) 114.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li> </ul>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2,039.0	감) 114.5	121,924.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7,003.0	감) 350.0	86,653.0	71.1	
자연녹지지역	35,036.0	증) 235.5	35,271.5	28.9	

#### 나.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2,039.0	감) 114.5	121,924.5	100.0	
주거용지	82,282.0	감) 15.0	82,267.0	67.5	
도시기반시설용지	36,914.0	감) 98.5	36,815.5	30.2	
도로	13,151.0	감) 38.9	13,112.1	10.7	
근린공원	19,074.0	감) 71.0	19,003.0	15.6	
공공공지1	1,822.0	증) 11.4	1,833.4	1.5	
공공공지2	2,867.0	-	2,867.0	2.4	
노유자시설	2,843.0	감) 1.0	2,842.0	2.3	시립어린이집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	3,343	73,795 (13,112.1)	2	1,813	36,355 (2,002)	1	345	6,149 (2,153)	1	1,185	31,291 (8,957.1)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185	31,291 (8,957.1)	-	-	-	-	-	-	1	1,185	31,291 (8,957.1)
중로	2	2,005	40,778 (2,427)	1	1,660	34,629 (274)	1	345	6,149 (2,153)	-	-	-
소로	1	153	1,726 (1,728)	1	153	1,726 (1,728)	-	-	-	-	-	-

※ 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 35	보조간선 도로	1,185	대3-1-6	대3-1-2	일반 도로	-	'99.03.04	
변경	대로	3	1-8	25~ 35	보조간선 도로	1,185	대3-1-6	대3-1-2	일반 도로	-	-	47.9㎡ 감소
기정	중로	1	19	20~ 23	집산 도로	1,660	대2-1-5	대3-1-2	일반 도로	-	'96.02.11	
변경	중로	1	19	20~ 23	집산 도로	1,660	대2-1-5	대3-1-2	일반 도로	-	-	4㎡ 증가
기정	중로	2	20	15~ 21	집산 도로	345	중1-19	대3-1-8	일반 도로	-	'87.06.18	
변경	중로	2	20	15~ 21	집산 도로	345	중1-19	대3-1-8	일반 도로	-	-	3㎡ 증가
기정	소로	1	250	11	국지 도로	153	대3-1-8	근린 공원A	일반 도로	-	김해시고시 제2018-81호 (2018.03.26)	
변경	소로	1	250	11	국지 도로	153	대3-1-8	근린 공원A	일반 도로	-	-	2㎡ 증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8호선	대로 3-1-8호선	•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 면적감소 - 9,005.0㎡→8,957.1㎡ 감) 47.9㎡	• 도시계획시설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중로 1-19호선	중로 1-19호선	•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 면적감소 - 270.0㎡→274.0㎡ 증) 4.0㎡	• 도시계획시설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중로 2-20호선	중로 2-20호선	•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 면적감소 - 2,150.0㎡→2,153.0㎡ 증) 3.0㎡	• 도시계획시설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소로 1-250호선	소로 1-250호선	•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 면적감소 - 1,726.0㎡→1,728.0㎡ 증) 2.0㎡	• 도시계획시설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83	두곡공원	근린공원	김해시 삼계동 산53번지 일원	19,074	감) 71	19,003	김해시고시 제2018-81호 (2018.03.26)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83	두곡공원 (근린공원)	• 면적감소 : 19,074㎡ → 19,003㎡ 감) 71㎡	• 도시계획시설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074	감) 71	19,003	100.0	
기반시설	소 계	1,647	-	1,647	8.7	
	도 로	1,358	-	1,358	7.2	
	광 장	289	-	289	1.5	
휴 양 시 설		107	-	107	0.6	
운 동 시 설		533	-	533	2.8	
편 익 시 설		24	-	24	0.1	
녹 지		16,763	감) 71	16,692	87.8	

□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1)기반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47	-	-	-	
기정	-	도로	전지역	1,358	-	-	-	
기정	0-1	광장1	삼계동 산56번지	184	-	-	-	
기정	0-2	광장2	삼계동 산56번지	105	-	-	-	

(2)휴양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07	-	-	-	
기정	1-1	휴게쉼터1	삼계동 산56번지	39	-	-	-	
기정	1-2	휴게쉼터2	삼계동 산53번지	68	-	-	-	

(3)운동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533	-	-	-	
기정	2-1	다목적 운동코트	삼계동 산54번지 일원	361	-	-	-	
기정	2-2	체력단련 시설1	삼계동 산56번지	124	-	-	-	
기정	2-3	체력단련 시설2	삼계동 산53번지 일원	48	-	-	-	

(4)편익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4	24	24	지상 1층	
기정	3-1	화장실	삼계동 산56번지	24	24	24	지상 1층	

(5)녹지 (변경)

- 기정

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4	24	24	지상 1층	
기정	3-1	화장실	삼계동 산56번지	24	24	24	지상 1층	

- 변경 (고시오류 정정)

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763	감) 71	16,692	-	-	-	
변경	-	녹지	전지역	16,763	감) 71	16,692	-	-	-	

□ 세부도로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358	-	-	-	
기정	세로		1	2.5	65	170	산책로	구역경계	광장1	
	세로		2	2~4	40	112	산책로	광장1	세로4	
	세로		3	2	19	38	산책로	세로2	다목적 운동코트	
	세로		4	1.5	254	380	산책로	다목적 운동코트	휴게쉼터2	
	세로		5	1.5	257	387	산책로	세로4	세로6	
	세로		6	1.5	127	190	산책로	세로4	세로4	
	세로		7	1.5	20	30	산책로	구역경계	광장2	
	세로		8	1.5	34	51	산책로	광장2	세로5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5	공공공지	김해시 삼계동 564-3번지 일원	1,822.0	증)11.4	1,833.4	김해시고시 제2018-81호 (2018.03.26)	
기정	1-26	공공공지	김해시 삼계동 산57-6번지 일원	2,867.0	-	2,867.0	김해시고시 제2018-81호 (2018.03.26)	

결정(변경) 사유서

도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5	공공공지	• 면적증가 : 1,822.0㎡ → 1,833.4㎡ 증) 11.4㎡	• 도시계획시설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2,039.0	감)114.5	121,924.5	-	-	122,039.0	감)114.5	121,924.5	-
I	84,104.0	감) 3.6	84,100.4	I-1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	82,282.0	감) 15.0	82,267.0	주택용지
				I-2	김해시 삼계동 564-2번지 일원	1,822.0	증) 11.4	1,833.4	공공공지 (1-25)
II	24,784.0	감) 72.0	24,712.0	II-1	김해시 삼계동 산53번지 일원	19,074.0	감) 71.0	19,003.0	근린공원 (1-183)
				II-2	김해시 삼계동 산57-1번지	2,843.0	감) 1.0	2,842.0	노유자시설 (시립어린이집)
				II-3	김해시 삼계동 145번지 일원	2,867.0	-	2,867.0	공공공지 (1-26)
도로	13,151.0	감) 38.9	13,112.1	-	-	13,151.0	감) 38.9	13,112.1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주택용지(변경)

도 면 표 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김해시 삼계동 519-3 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가)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li> <li>· 불허용도(나)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이하</li> <li>※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상 인센티브 산정 (기정)</li> <li>1.용적률 = 기준용적률+[1.5×(초과확보면적×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면적]</li> <li>가. 기준용적률 = 200%, 허용용적률 =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li> <li>나. 초과확보면적 = 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 - 의무확보면적 - 중1-19호선 가감속차로 - 공공시설 제공부지 내 국공유지 - 공동주택용지 내 국공유지도로</li> <li>= 36,914 - 6,102 - 270 - 1,827 - 3,084</li> <li>= 25,631㎡</li> <li>- 공공시설제공부지면적 : 도로 13,151㎡, 공원 19,074㎡, 공공공지 4,689㎡ (자연녹지지역 : 32,193㎡, 제2종일반주거지역 : 4,721㎡)</li> <li>- 의무확보면적 : 공원 6,102㎡(122,039×5%)</li> <li>다. 주택건설사업부지면적 = 82,282㎡</li> <li>2.공공시설 제공부지 평균용적률</li> <li>= [(220×4,721)+(100×32,193)]÷36,914 = 115.3</li> <li>3.인센티브 허용범위 산정</li> <li>= 200%+[1.5×(25,631×115.3)/82,282] = 253.9% 이하</li> <li>=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인 250%이하 적용</li> <li>※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상 인센티브 산정 (변경)</li> <li>1.용적률 = 기준용적률+[1.5×(초과확보면적×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면적]</li> <li>가. 기준용적률 = 200%, 허용용적률 =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li> <li>나. 초과확보면적 = 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 - 의무확보면적 - 중1-19호선 가감속차로 - 공공시설 제공부지 내 국공유지 - 공동주택용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부지</li> <li>= 36,815.5 - 6,096.2 - 274 - 1,754 - 3,073</li> <li>= 25,588.3㎡</li> <li>- 공공시설제공부지면적 : 도로 13,112.1㎡, 공원 19,003㎡, 공공공지 4,700.4㎡ (자연녹지지역 : 32,429.5㎡, 제2종일반주거지역 : 4,386㎡)</li> <li>- 의무확보면적 : 공원 6,096.2㎡(121,924.5×5%)</li> <li>다. 주택건설사업부지면적 = 82,267㎡</li> <li>2.공공시설 제공부지 평균용적률</li> <li>= [(220×4,386)+(100×32,429.5)]÷36,815.5 = 114.3</li> <li>3.인센티브 허용범위 산정</li> <li>= 200%+[1.5×(25,588.3×114.3)/82,267] = 253.3% 이하</li> <li>=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인 250%이하 적용</li> </ul>
		높 이	· 29층이하
기 타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은 시행지침을 참조하여야 함		

(2)노유자시설(변경없음)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2	김해시 삼계동 산57-1 번지	용 도	· 지정용도(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노유자시설 · 불허용도(나)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기 타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은 시행지침을 참조하여야 함



## 경남 김해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김해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김 해 시 장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 3. 방재성능목표

시군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김해시	95mm	130mm	155mm

###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영)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우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영)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